



대한비뇨의학회

THE KOREAN UROLOGICAL ASSOCIATION

수 신 평의원 제위

참 조

제 목 제21대 회장 선거일 공고 및 선거인단 자격 유지를 위한 미납회비 납부 요청

1. 평의원님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대한비뇨의학회 제21대 회장을 선출하는 공식 선거가 2021년 11월 3일(수) 평의원회에서 실시됨에 따라 회장 선출 세칙 제11조에 의거하여 회장 선거일을 확정 공고합니다.

3. 학회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가 될 수 있도록 학회 회칙에 따라 철저한 선거관리를 하고 있으며, 회장 선거와 관련한 추가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 및 규정에 따라 지속적으로 평의원 여러분께 공지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 선거인의 자격은 선거인 명부 확정일 전까지 최근 3년간 학회 회비가 완납되신 평의원만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점 유념하시어 아직 회비가 미납되신 평의원께서는 10월 18일(월) 까지 납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연회비 납부 여부는 학회 홈페이지 로그인 후, 우측 상단의 “연회비 납부” 메뉴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회장 선거일 및 시간 공고 ※

① 선거일 및 시간: 2021년 11월 3일(수) 오후 5시 전후*

② 투표 장소: 서울 COEX 그랜드볼룸 102호

③ 제73차 학술대회 정기 평의원회 시간 및 장소

2021년 11월 3일(수) 15:00-18:00 / 서울 COEX 그랜드볼룸 103호

* 회장 선거 시간은 평의원회 진행 시간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오후 3시부터 개최되는 평의원회가 종료되면 바로 이어서 회장 선거가 진행됩니다.)

붙임: 1.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선출 규정 및 선출 세칙 1부. 끝.

대한비뇨의학회장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담당자 박혜인 과장 김가영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박광성

회장 이상돈

협조자 법제윤리이사 김태환

총무이사 손환철

시행 대비번호 2021-(20)-292호

(2021. 10. 11.) 접수

우 04385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67 용산파크타워 오피스텔 (103동 1102호) / www.urology.or.kr

전화 02)574-8190

전송 02)573-8192

/ E-mail: urology@urology.or.kr

/ 공개

회장 선출 규정

-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차기회장 선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 2 조 (자격)**

정회원으로 20년 이상 회원의 의무를 다한 사람이어야 한다.

- **제 3 조 (선출 투표)**

선출투표는 5명 이상의 평의원이 추천한 후보를 대상으로 하며 1차 투표에서 과반수 득표자가 있을 경우 당선자로 결정하며 과반수 득표자가 없을 경우 다수의 득표를 얻은 2인을 대상으로 결선 투표를 시행한다.

- **제 4 조 (선거일자)**

선거일자는 추계학술대회 전날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제 5 조 (선거관리위원회)**

선거를 원만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회장은 선거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 **제 6 조 (선출 제한)**

의과대학 졸업 년도를 기준으로 하여 동기 중에 1명만 선출할 수 있다.

- **제 7 조 (기타)**

본 규정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에 준한다.

부칙

개정 : 2021년 6월 11일 평의원회

회장 선출 세칙

- **제 1 조 (목적)**

본 세칙은 대한비뇨의학회 회장 선출 규정에 의거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인 선거관리를 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다.

- **제 2 조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1. 선거관리위원장은 평의원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한다.
2.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은 회장이 추천하는 상임이사 2명과 선거관리위원장이 추천하는 평의원 3명으로 구성한다.
3. 선거관리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선거종료와 동시에 만료된다.
4.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일 45일전까지 구성한다.

- **제 3 조 (선거관리위원회 성립 및 의결)**

1. 선거관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선거관리위원장은 투표권이 없으며 가부동수인 경우 결정권을 가진다.

- **제 4 조 (선거관리위원회 임무)**

1. 입후보자의 자격심사
2. 선거인명부 작성 및 확인
3. 입후보자의 등록 및 선거일공고
4. 투표용지 양식결정 및 개표 방법결정
5. 선거운동에 관한사항
6. 투,개표의 관리
7. 당선자확정보고

- **제 5 조 (참관인단 구성 및 임무)**

1. 선거관리위원장은 공정, 투명한 선거를 위해 한시적으로 각 후보자가 추천하는 대리인으로 참관인단을 구성한다.
2. 투표 및 개표를 감독한다.

- **제 6 조 (입후보등록)**

1. 차기회장 입후보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가. 입후보 등록신청서 1통 (소정양식)

나. 추천서 (평의원 5인 이상) (소정양식)

다. 서약서 1통 (소정양식)

다. 기타 선거관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 7조 (입후보 등록 확정공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입후보등록이 확정된 입후보자의 명단을 입후보등록 확정 직후 평의원들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 **제 8 조 (입후보자 공석 시 추천)**

입후보 등록 마감일까지 입후보자 없을 경우에는 등록기간을 1주일 연장하며, 연장 이후에도 입후보 자가 없을 경우 상임이사회에서 후보를 추천한다.

• **제 9 조 (투표와 개표)**

1. 투표와 개표는 평의원회에서 실시한다.
2. 투표는 직접, 비밀 무기명투표로 한다.
3. 2차 결선투표에 대비하여 2차 투표용지를 사전에 준비한다.
3. 개표에 관한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 **제 10 조 (당선자 발표)**

선거관리위원장은 당선자가 결정되면 선거결과를 각 후보자에게 정확히 전달하고 지체 없이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회장은 이를 확인한 후 당 평의원회에서 확정발표를 하여야 한다.

• **제 11 조 (일정)**

선거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일정을 정한다.

1.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선거일 45일 전까지
2. 선거인 명부확정: 선거일 15일 전까지
3. 입후보 등록: 선거일 30일 전까지
4. 입후보 등록확정: 선거일 30일 전까지
5. 입후보 등록확정 후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대한비뇨의학회 정회원을 대상으로 정책발표를 한다.

• **제 12 조 (정견발표)**

1. 각 후보자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정하는 절차에 따라 투표 직전에 정견발표를 할 수 있다. 정견발표 순서는 추첨에 의한 기호 순서로 한다.
2. 입후보자는 정견발표 후 투표장 밖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 **제 13 조 (선거운동)**

1. 입후보 등록확정 전에는 비윤리적 및 사전 선거운동을 금한다.

2. 입후보 등록확정 후에는 서약서의 사항을 엄격히 준수한다.

- **제 14 조 (선거기록 보존)**

선거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기록 정리하여 학회에 2년간 보존한다. 단, 후보자들의 동의를 얻어 파기할 수 있다.

- **제 15 조 (기타)**

본 세칙에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선거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부 칙

1. 본 세칙은 2019년 11월부터 시행한다.

2. 후보자가 1인일 때에는 선거인단의 과반수 이상이 투표에 참여하고, 투표 참여자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당선된다. 단, 득표수는 최소한 선거권자 총수의 3분의 1 이상이 되어야 당선인으로 결정한다. 당선인이 없을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재투표를 통해 당선인 결정이 되어야 한다.

3. 1차 개정 : 2021년 5월 26일 상임이사회